

대학원 학칙

제정 : 2005. 11. 1.

개정 : 2006. 2. 3., 2006. 5. 10., 2006. 10. 2., 2007. 10. 26., 2007. 11. 21., 2008. 1. 28., 2008. 8. 13., 2008. 10. 15., 2009. 10. 15., 2010. 9. 17., 2010. 12. 7., 2011. 7. 29., 2012. 11. 1., 2013. 12. 4., 2014. 2. 28., 2014. 10. 21., 2014. 11. 6., 2015. 12. 11., 2017. 3. 1., 2017. 12. 27., 2019. 9. 1., 2019. 12. 27., 2021. 2. 4., 2021. 7. 14., 2022. 1. 17., [2022. 6.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따라 이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대학교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글로벌골프대학원(이하“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3. 1.)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 교육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그리고 대학원 비전인 '문화다양성을 기반 한 국제전문인' 양성에 입각하여 전인적 인격의 교육전문가, 탐구적 지성의 교육전문가, 국제적 안목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3. 삭제 (2017. 3. 1.)
 4. 통역번역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고도의 통번역 실무역량을 토대로 유연한 기술 활용 능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다각도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5. 삭제 (2015. 12. 11.)
 6. 삭제 (2017. 3. 1.)
 7. 삭제 (2017. 3. 1.)
 8. 글로벌골프대학원은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하며, 골프스윙원리, 골프스윙분석, 골프 기능성 트레이닝 및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기 기술을 배워 골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가지며, 골프산업 및 골프 트레이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신설 2015. 12. 11.)
 9. 산업·경영대학원은 우리 대학 교육목표인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계형 전문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된 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실천적 도덕성, 창의적 탐구성, 국제적 전문성을 겸비한 산학 연계형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 가. 삭제 (2017. 12. 27.)
- 나. 삭제 (2017. 12. 27.)
- 다. 삭제 (2017. 12. 27.)
- 라. 삭제 (2017. 12. 27.)

제4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은 제3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일반대학원

- 가. 다언어·다문화 융합을 지향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전문지식 심화 (개정 2017. 12. 27.)
- 나. 학부 특성화와 연계된 독창적인 연구능력 함양 (개정 2017. 12. 27.)
- 다. 사회구조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관·산 협동능력 제고 (개정 2017. 12. 27.)
- 라. 문화 다양성 허브 구축을 통한 고급정보능력 신장 (개정 2017. 12. 27.)

2. 교육대학원

- 가.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인성·품성 함양 (개정 2017. 12. 27.)
- 나. 교육이론 및 교과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교육현장 활용능력 배양 (개정 2017. 12. 27.)
- 다. 교육현장 맥락에 기반 한 교수 전문성 개발 (개정 2017. 12. 27.)
- 라.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 계발 (개정 2017. 12. 27.)
- 마. 삭제 (2017. 12. 27.)

3. 삭제 (2017. 3. 1.)

4. 통역번역대학원

- 가. 급증하는 국제교류에 있어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 능력 함양 (개정 2017. 12. 27.)
- 나. 국내외 문화간 중개를 담당하는 번역 능력 함양 (개정 2017. 12. 27.)
- 다. 언어·기술·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실무 경험 축적 (개정 2017. 12. 27.)
- 라. 삭제 (2017. 12. 27.)

5. 삭제 (2015. 12. 11.)

6. 삭제 (2017. 3. 1.)

7. 삭제 (2017. 3. 1.)

8. 글로벌골프대학원 (신설 2015. 12. 11.)

- 가. 골프산업의 범위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함양
- 나. 골프스윙 메카니즘의 이해 및 적용능력 함양
- 다. 다양한 골프스윙분석기술의 습득 및 함양
- 라. 신체능력과 골프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 함양
- 마. 다양한 골프트레이닝 방법 습득과 적용능력 함양

9. 산업·경영대학원 (신설 2017. 3. 1.)

- 가. 성실하고 창의적인 지식인 육성 (개정 2017. 12. 27.)

- 1) 삭제(2017. 12. 27.)
- 2) 삭제(2017. 12. 27.)
- 3) 삭제(2017. 12. 27.)

- 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인 육성 (개정 2017. 12. 27.)

- 1) 삭제(2017. 12. 27.)
- 2) 삭제(2017. 12. 27.)
- 3) 삭제(2017. 12. 27.)

- 다.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교육능력 함양 (개정 2017. 12. 27.)

- 1) 삭제(2017. 12. 27.)
- 2) 삭제(2017. 12. 27.)

- 라. 교육현장 실습을 통한 교육의 실용성 강화 (개정 2017. 12. 27.)

- 1) 삭제(2017. 12. 27.)
- 2) 삭제(2017. 12. 27.)

제5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1.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개정 2017. 12. 27., 2021. 7. 14.)
2.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3. 각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2021. 7. 14.)
-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6조(학과·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7.)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1. 7. 29., 2017. 12. 27.)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이내로 하며, 학과별 최대 허용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7조(학위의 종류)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의 학위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2021. 7. 14.)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9조(입학허가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허가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12. 27.)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개정 2012. 11. 1.)

③ 교육대학원은 학사과정 전공(부전공 포함)과 동 대학원의 전공분야의 불일치로 인해 교원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지원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격 후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외국인학생 입학)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별도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이 입학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를 1학기 이상 이수할 것을 전제로 입학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생 입학) 정부 각 부처의 재직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별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7. 12. 27.)

제15조(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16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7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2년,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1.5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5년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과 통역번역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

③ 전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 3년, 박사학위과정 5년,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2.5년, 석·박사통합과정 8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5. 12. 11., 2017. 3. 1., 2021. 7. 14.)

②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과 통역번역대학원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3. 1., 2021. 7. 14.)

③ 전항에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27., 2021. 7. 14.)

⑤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임교수가 재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0.)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9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등록금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2021. 7. 14.)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증빙에 의하여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할 경우 반환 또는 이월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2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의 추가연장과 해외지사근무(국내지사 포함),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2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하기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23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3.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4. 대학원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인하여 제적된 자

제25조(전과) 각 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 포함)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9. 1., 개정 2021. 7. 14.)

제 5 장 교과, 수료, 학점

제26조(교과목)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4.)

제27조(교과목이수계획 지도)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입학 후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이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8조(수료) ① 각 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으로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40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으로 한다.
-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으로 한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논문연구 6학점 포함)으로 한다.
- ⑤ 각 학위과정별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이상이어야 한다.
- ⑥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5. 12. 11., 2021. 7. 14.)

제29조(학점 취득 및 인정)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교육실습 학점, 타 대학원과의 학점 인정,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점 인정, 선수과목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2021. 7. 14.)

제 6 장 학업성적

제30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등급	점수	평점	성적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70미만	0.0			

② 성적 평점 2.0 이상 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논문연구, 교육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합격(P), 불합격(NP)로 성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평점평균 계산 시 반영하지 않는다.

제31조(재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성적평점이 2.5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제 7 장 자격시험

제32조(논문제출 자격시험 구분) ①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시험응시자격,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실시시기, 재응시, 시험위원과 합격여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2021. 7. 14.)

제33조(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심사 합격시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위논문

제34조(논문제출 자격)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1. 7. 14.)
6. 이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4. 10. 21.)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1. 지도교수 선정
2. 논문계획서 제출
3. 논문발표 및 심사
4.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36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본 대학교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이 행하며, 위원 구성 및 자격, 외부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1. 7. 29.] (개정 2017. 12. 27., 2021. 7. 14.)

제3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 및 국제학회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9., 2017. 12. 27.)

제 9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 요건)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각 과정별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대신 학과별로 지정된 석사학위 논문에 상응하는 대체 실적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7. 12. 27., 2021. 7. 14.)

제39조의2(복수학위 수여) ① 외국대학과의 대학원과정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원과의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9.)

제40조(학위기)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기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41조(석·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명예박사학위

제42조(자격) 학술과 문화에 크게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4조(학위종별) 명예박사의 학위종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 11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5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각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과제, 기간 및 수강인원 등 개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46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수강료, 학기당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 12 장 장학금 및 상벌

제47조(장학금)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方正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4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 13 장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

제50조(학과·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① 각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교수와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교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한다. 단,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1조(학칙준수) 학생은 이 대학원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52조(학생자치활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수업, 연구 등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4.)

제53조(원우회)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장 대학원위원회

제5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5조(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별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이 학칙 제24조 제4호에 관한 사항(내부명시 사항)
7.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의 지급·보조에 관한 사항
9.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일반대학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8조(운영위원회) 각 대학원별 운영에 있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외에 세부적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 15 장 학칙개정

제59조(학칙개정절차) ① 위원회에서는 학칙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학원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삭제 (개정 2012. 11. 1.)

제 16 장 기타

제60조(현장실습) ① 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기당 학점인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학점인정기준, 현장실습계획, 성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61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62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05. 10.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 통역번역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에 관한 세칙, 대학원 선수과목이수규정,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교육대 학원 학위수여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규정, 편입학규정,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사내규, 통역번역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조기졸업 운영 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일반대학원 학칙, 각 특수대학원 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각 대학원별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6. 2.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국제통상대학원, TESOL대학원 및 정원조정)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사회체육학과 박사과정 신설)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정원조정 및 전공 폐과·신설, TESOL대학원 정원조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신설)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5.)

제1조(경과조치) 국제통상대학원으로의 명칭변경 학칙개정(2006.5.15.)에 따른 학적 변동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대학원 명칭의 경우 입학시의 명칭에 따르되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는 변경된 명칭에 따른다.
- ② 전공의 경우 복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적용하며 재입학생은 변경된 현행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③ 학위명의 경우 입학시 학칙에 근거한 학위명을 적용한다.
- ④ 이 경과조치는 2007.3.1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전공 폐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TESOL학과는 재적생이 졸업시까지만 유지되며,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 ② 국제통상경영대학원 명칭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전공명은 해당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09. 10. 1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대학원 정원조정, 국지지역학과 박사과정 신설, 비교문학과 명칭변경)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러시아어과 신설)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논문제출자격 추가, 석·박사학위수여 취소)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7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지역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지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수업연한 변경, [별표1]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석·박사과정에 글로벌경영학전공과 글로벌고위자전공을 두며,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는 ICT창의융합학과로 국제통상경영대학원의 중국지역통상전공은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으로 학과(전공)명을 변경하여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경과조치) 제34조 6호는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 신설·변경·폐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TESOL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대학원에, 2018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는 경영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러시아어과, 법학과, 비교문학문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아세안지역통상경영전공,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글로벌골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대학원 아세안지역통상경영전공,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글로벌골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TESOL대학원 TESOL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 TESOL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8조의 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 신설·변경·폐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의 재적

생은 명칭 변경된 산업·경영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시 변경된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수업연한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의학대학원 카이로프랙틱전공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의학대학원의 카이로프랙틱전공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의 글로벌지역학과, 언론홍보학과, 산업대학원의 전기전자자동화전공,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어린이일본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수료및이수학점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의학대학원의 학칙 제28조의 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산업·경영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카이로프랙틱전공 재적생은 통합의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유럽지역학과, 지중해지역학과, 중남미지역학과, 동남아시아지역학과, 러시아·중앙아시아·인도지역학과, 산업·경영대학원의 3D·로봇융합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19. 9. 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스포츠재활학과,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산업·경영대학원 한베무역통상전공, 경찰행정전공, 어린이중국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재적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2. 4.)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교육대학원 베트남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21. 7. 14.)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는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 17.)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베트남어번역학과, ICT창의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명칭이 변경된 한베번역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글로벌골프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글로벌골프대학원 골프과학전공, 골프비즈니스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22. 6. 20.)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0. 5.)

제1조 (시행일) [별표 1]의 일반대학원 및 산업·경영대학원의 학생정원 변경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글로벌회계학과 신설, 산업·경영대학원 뷰티운동재활전공 신설)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지역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지역언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별표 1]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 및 학위 종류표

(개정 2014. 10. 21, 2015. 12. 11, 2017. 2. 15, 2017. 12. 27, 2019. 12. 17, 2021. 2. 4., 2022. 1. 17., 2022. 10. 5.)

1. 일반대학원

과정	계열	학과	학위종별	입학정원(명)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60
		글로벌일본학과	문학석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석사, 지역학석사	
		한국학과	한국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글로벌지역·언어학과	국제지역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전공, 글로벌고위자전공)	경영학석사	
		한베번역학과	번역학석사	
		글로벌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공 학	인공지능융합학과	공학석사	
		스마트융합보안학과	공학석사	
	예체능	스포츠건강융합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39
		글로벌일본학과	문학박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박사, 지역학박사	
		한국학과	한국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글로벌지역·언어학과	국제지역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전공, 글로벌고위자전공)	경영학박사	
		*한국어번역학과	번역학박사	
		글로벌회계학과	경영학박사	
	공 학	인공지능융합학과	공학박사	
		스마트융합보안학과	공학박사	
	예체능	스포츠건강융합학과	이학박사	
전체				99

※ 석박사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 내에 있으며, *표시 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

2. 교육대학원

과정	계열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명)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한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	20
		체육교육전공		

3. 통역번역대학원

과정	계열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명)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한영전공	통역학석사 번역학석사 통역번역학석사	40
		한일전공		
		한중전공		

※ 통역번역대학원은 종합시험 결과에 따라 학위종별이 결정됨.

4. 산업·경영대학원

과정	계열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명)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경영전공(MBA)	경영학석사	94
		세무회계전공	경영학석사	
		한중무역통상전공	경영학석사	
		사회복지상담전공	상담학석사	
		탐정행정전공	탐정행정학석사	
	자연과학	통합의학전공	통합의학석사	
		자연농숲치유학전공	자연치유학석사	
	예체능	경호무도지도전공	경호무도학석사	
		스포츠재활전공	스포츠의학석사	
		필라테스재활전공	스포츠의학석사	
		골프전공	골프학석사	
		뷰티운동재활전공	스포츠의학석사	

[별지 제1호 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00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00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 ○ ○

학위번호 : 부산외대 (석) _____

[별지 제2호 서식]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

학위번호 : 부산외대 (박) _____

[별지 제3호 서식]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하여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이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

학위번호 : 부산외대 (명박) _____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